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084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6년 4월 7일
- 라. 회부일자 : 2016년 4월 12일

## 2. 제안이유

- 경제민주화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및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경제민주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 수립 및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3. 주요내용

- 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 나. 경제민주화 정책 심의를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

- 다. 경제민주화 정책 검토 및 중앙정부 건의 (안 제14조)
- 라. 경제민주화업무 관련 시·구간 정책 협의 (안 제15조)
- 마.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장애요인 발굴에 시민제안 반영 (안 제16조)
- 바. 경제민주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실시 및 국제회의 개최 (안 제18조)

####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에서 제시된 상생과 공정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천과제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한 것임.

##### 나.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논의의 배경

- 경제민주화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하여 우리사회의 주요한 정치적·경제적 아젠다(Agenda)가 되었음.
- 경제민주화는 헌법 제119조 제2항<sup>1)</sup>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아직 개

념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경제민주화 정책의 범위와 실현 방법 등에 대하여 정당과 경제 주체별로 관점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박근혜 (당시) 후보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경제적 약자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를 위한 조세·재정 정책 등을 실현방안으로 제안하였음
- 문재인 (당시) 후보는 상생·협력의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재벌개혁, 금융개혁, 서민의 가계부채 경감,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의 보호 등을 제안하였음.

○ 이처럼 경제민주화는 달성방법과 수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시장경제의 부작용인 양극화와 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한 경쟁의 기회보장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핵심으로 하고 있음.

- 우리 헌법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독일의 경우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허용하는 ‘(노사)공동결정제도’<sup>2)</sup>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를 실현한 정책으로 거론되고 있음.

---

1)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독일은 (노사)공동결정제도에 따라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근로자 수에 비례한 위원들로 구성된 노동자협의회(Betriebsrat)에서 근무사항과 임금, 휴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결정하며, 노동자 500명을 초과하는 자본회사는 노동자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Aufsichtsrat)를 운영하도록 하여 이사의 선임, 회사업무 집행의 감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 다. 서울시의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과 내용

- 서울시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협력의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식을 2016년 2월 11일에 개최하여 기업계, 시민단체, 상인단체 등과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공동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음.

### < 협약 체결기관 : 총 14개 >

- ◆ 기업계(2)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 시민단체(6)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희망살림, 청년연대은행,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소비자연맹,
- ◆ 금융계(1) : 우리은행
- ◆ 상인단체(4) :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 ◆ 노동계(1)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아울러 서울시는 경제민주화의 핵심가치인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금융취약계층 분야, 불공정 거래 분야, 생산자·소비자 분야, 임대차 분야, 노동권 분야 등에 1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음.
- 실천과제별로 세부사업들을 살펴보면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발굴된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에 시행되거나 경제민주화와 별개로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경제민주화 영역에 포함된 경우가 다수임.

### <서울시 경제민주화 실천과제와 세부사업>

분야		실천과제와 사업
상생	대·중소기업	1.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자영업 클리닉, 자영업 협업화 사업, -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신규)
		2.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실태조사 (신규)
		3.대형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협력 지원 강화

		- 복합쇼핑몰 출점시 상생특별전담기구 설치 운용. 서울시 사업조정 심의회 운영	
	<b>금융취약계층</b>	4.금융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 공적채무조정 불가능자 부채탕감 추진(신규) - 금융복지 상담센터 확대, 시민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 5.청년층의 건강한 금융활동 지원 - 청년층 대상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전환대출 6.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 영세사업자 신용불량 및 관허사업제한 해제(신규) - 소액예금(150만원미만) 압류해제(신규) 7.중금리 보증상품을 통한 금융취약 소상공인 지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중금리 보증상품 출시(신규)	
<b>공정</b>	<b>불공정 거래</b>	8.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불공정 피해 정기실태조사 - 프랜차이즈 인증제 실시(신규) 9.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 대금 e바로시스템, 하도급 호민관	
	<b>생산자·소비자</b>	10.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 - 소비자 단체 및 소비자 소송 지원(신규) - 민관 상시 모니터링 실시 11.특사경 활동 확대를 통한 민생침해 근절 강화 - 민생업체 대한 기획단속 실시 - 생활밀착형 민생침해범죄 대응 수사인력 확대 - 불법사금융피해상담센터 개설(신규)	
		<b>임대차</b>	12.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13.공정한 상가임대제도 정착 -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도입(신규), 임대상인 자산화 위한 융자지원(신규)
			14.도시재생에 따른 임대상인의 이주 예방 - 도시재생 사업 거버넌스 운영, - 지역별 젠트리피케이션 상담전문인력 배치(신규)
	<b>노동</b>	<b>노동</b>	15.생활임금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확산 - 생활임금제 확대 및 민간 확산 유도 16.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7년초까지 마무리

- 또한 경제민주화 실천과제의 발굴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제민주화팀’(소상공인지원과)을 신설하였고 금년 중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해외사례의 공유를 목적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며, ‘경제민주화지수’의 개발 등을 통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민주화 모델을 구축할 계획임.

## 라. 조례안의 주요 내용

### (1) 경제민주화의 정의 등(안 제1조부터 안 제5조)

- 조례안의 정의에 따르면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위하여 서울시의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불균형과 불공정한 거래관행의 개선’, ‘경제적 약자의 보호’, ‘상생 환경의 조성’을 핵심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제민주화”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내 대·중 소기업 간, 시민 간, 세대 간 존재하는 경제적 불균형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며 상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하지만 경제적 불균형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특정 경제 주체에 대한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라는 방식으로 귀결될 여지가 많아 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사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또한 행정자치부는 종전에 균형있는 경제성장, 적절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 도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사무가 자치사무가 아니라는 해석을 한 바가 있어(붙임자료 참조)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음.

### 〈 경제민주화 관련 사무에 대한 질의 회신〉

<질의요지> : 경기도지사

경제민주화 관련 사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 행정자치부장관(선거의회과)

검토대상 조례안에서 **경제민주화**는 균형있는 경제성장, 적절한 소득의 배분,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도모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전국적으로 국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사무가 자치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음.
  - 다만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열거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안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관련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또한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고 안 제5조 제2항에서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서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을 통하여 확정된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사업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 등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
3.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등 공정경제에 관한 사항
4.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노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6. 경제민주화 도시 실현을 위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범주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에서 발표된 16개의 실천 과제처럼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범주와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조례안에서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범주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조례가 안 제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규칙으로 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여야 한다.

○ 참고로 이미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와 전라북도의 경우 기본계획과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 요인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음.

### <경기도와 전라북도의 경제민주화 조례 중 관련 규정>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li> <li>2. 중소기업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li> <li>3.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에 건의 등에 관한 사항</li> <li>4.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사항</li> <li>5.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계획</li> <li>6. 재정 계획에 관한 사항</li> <li>7. 공공조달에 있어서 경제민주화 지원정책 반영</li> <li>8.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li> <li>2. 중소기업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5.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6.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li> <li>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li> <li>8. 탄소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등의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li> <li>9. 농어업 관련 산업의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li> <li>10. 관광 및 체육, 문화예술의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li> <li>11.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장애요인 발굴과 중앙정부 건의 등에 관한 사항</li> <li>12. 재정 계획에 관한 사항</li> <li>13.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제8조(경제민주화 정책의 장애요인 검토·건의 및 의견개선)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중앙부처 등에 건의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밀착형 사양 산업 지원 및 보호</li> <li>2. 재건축, 재개발등에 있어 주거권 보장</li> <li>3. 입찰 및 관급공사 등에 중소기업, 관내업체의 참여 확대</li> <li>4. 하도급, 용역 등에 있어서 계약 내용 철저히 준수</li> <li>5. 중소기업 고유 업종 확대 지정운영</li> <li>6. 그 밖에 경제민주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제14조(경제민주화 정책 검토·건의) ①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중앙부처 등에 건의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li> <li>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li> <li>3. 도내 이전기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li> <li>4. 주민밀착형 지역연고산업 지원 및 보호</li> <li>5. 지역개발사업(재건축, 재개발 등)에 있어 소외계층의 경제적 이익 보호</li> <li>6. 입찰 및 관급공사 등에 중소기업, 관내업체의 참여 확대</li> <li>7.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li> <li>8.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관한 사항</li> <li>9. 그 밖에 경제민주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 (2) 경제민주화위원회(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 안13조)

-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경제민주화 장애요인 그 밖에 경제민주화 정책의 수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서울시의원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6조·제7조).
- 또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안 제8조), 위원장의 직무(안 제9조), 위원회의 회의(안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안 제11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 이는, 서울시 경제민주화 모델의 수립을 위하여 새로운 경제민주화 영역의 발굴이 요구되나 자치입법권과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이해가 걸려있어 장애요인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위원회’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음.

## (3) 경제민주화정책의 검토·건의 등(안 제14조부터 안 제20조)

- 시장은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중앙부처 등에 건의와 의견개진을 할 수 있고(안 제14조), 장애요인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5조).
- 다만 자치구에 시의 의견 수용을 요청하고 자치구가 시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독립적 지위와 법인격을 가지는 자치구의 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음.

-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는 비록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의 구역 안에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상하관계가 아닌 별개의 법인격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임.

제15조(시·구간 정책 협의)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의 의견을 청취하며, 자치구에 시의 의견 수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치구는 시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에 건의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 한편,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실천과제와 사업의 발굴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시민제안을 통한 정책과 장애요인의 발굴은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민 참여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안 제16조).
- 또한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이행의 효과와 시민체감도 등을 반영한 경제민주화지수의 개발은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확산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안 제17조).
  - 단, 실천과제의 세부사업 실적 등 경제민주화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변경이 잦은 기준을 지표로 설정할 경우 경제민주화지수의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아울러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식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교육 실시와 교재 마련을 지원하고 국제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안 제18조), 경제민주화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행·재정적 지원(안 제19조)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마. 결론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sup>3)</sup> 서울시(경제진흥본부)는 서울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서울시의 ‘일자리대장정’과 함께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사회가 양극화와 부의 불균형 등으로 경제 영역의 부정의(不正義)가 경제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고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추진은 상생·공정·노동권 보호를 통한 포용성장을 위한 공동협력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중요성이 인정되고 의의가 있음.
- 한편, 중앙정부는 법률로 경제영역의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경제주체 간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의 한계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권한과 방법이 제한되고 있어 중앙정부와는 차별되는 서울형 경제민주화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본 조례안에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나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과 사업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될 수 있도록 향후 보완이 요구됨.

---

3)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이 말하는 서울시 경제정책 방향”, 파이낸셜뉴스(2016년 04월 01일자)

## 〈참고자료〉

정부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 안 전 행 정 부

수신자 경기도지사(경제정책과장)  
(경유)

제목 경제민주화 관련 사무에 대한 질의 회신

경기도 경제정책과-15532(2013.12.11.)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 질의요지 >

- ① 경제민주화 관련 사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 ② 지자체장이 국가사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지?

#### < 회신내용 >

- ① 검토대상 조례안에서 경제민주화는 균형있는 경제성장,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 도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 이는 전국적으로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 참 고 >

- ▣ 헌법은 전문 및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있다(憲裁 2001헌마132, 2001.6.28.)
- ▣ 헌법 제119조 제2항 :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 범위 밖인 국가사무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